
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623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31.

발 의 자 : 박광온 · 송갑석 · 김영주
권칠승 · 전현희 · 윤준호
김종민 · 이춘석 · 윤관석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
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,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
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
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.

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‘당해’를
‘해당’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
임(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).

법률 제 호
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본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